

전주지방법원 2023. 4. 4 선고 2022가단78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3. 3. 14.

판 결 선 고 2023. 4. 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1. 1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피고들은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등기계 2019. 11. 19. 접수 제108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

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.

나.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,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2000다44348 판결).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).

다. 판단

- 1) 원고는 D에 대한 가액배상금 660,000,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,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한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- 2)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
신청을 한 2019. 11. 20.경에는 ‘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, 그 때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’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① 원고는 D을 피고로 한 광주고등법원 2017나15309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2019. 5. 1. “D은 원고에게 6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원고는 D에 관하여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였다.

② 원고는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19. 11. 18. 전주지방법원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.

③ 그런데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들 사이에 2019. 11. 15.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9. 11. 19.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9. 11. 19. 접수 제108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,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2019. 11. 20.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.

④ 그러자 원고는 2019. 11. 20.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으로 삼았다.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9. 11. 25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.

3)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22. 3. 10.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분명하다.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,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2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판사 김경선

별지